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도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57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의의원 : 서도원 의원,

최재규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부자 관리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접수 방법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이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부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부서 소관 국장

2. 기부금품 접수 해당 국·소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소관 팀장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접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가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경우에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2024.2.27. 타법개정, 2024.7.3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 3) 환경보전
-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 5) 보건·복지 증진
-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
-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

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거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5조)
- 기부자 예우를 목적으로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등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현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5명임. 일반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은 ‘달성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회의당 최대 1인 20만원 이내로 지급되므로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안 제5조)
- 기부자 예우를 목적으로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등 제작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안 제6조)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서 도 원 (☎ 2291)